- 예산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「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(2017. 9. 26)이후 개최 실적이 없어
- 기능이 유사한 예산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예산군 안전정책실무 조정위원회와 예산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근거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 2[붙임1]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 : 2024. 01. 12. ~ 2024. 02. 01.[20일간]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【붙임 2】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폐지안은 「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」와 「예산군 안전 정책실무조정위원회」,「예산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」가 기능이 유사하고 기존 조례가 폐지되어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폐지가 되어도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.